

북항친수공원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24. 9.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한 북항친수공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북항친수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용 기본사항

제4조(개방시간) ① 공원의 개방시간은 05:00~24:00까지로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11.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수사항) ① 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객의 편의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 내에 차량, 오토바이, 전동차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은 예외로 한다.
2. 공원 내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3. 공원 내에 텐트,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 등을 위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장소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원 내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원 내에서는 수영, 수상 레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 등을 위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공원 내에서는 흡연, 주류 소지·반입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원 내에서는 노상방뇨, 고성방가, 노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원 내에서는 공놀이 등 체육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10.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시, 공연, 행사 또는 상업목적의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 전단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종교의식·포교, 정치적 목적의 행사, 체육행사, 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각종 시설물의 임의 조작 및 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그 밖에 공단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이용의 제한) ① 공원 내 시설물 이용 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각 시설물의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물별로 게시한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8조(사용허가) ① 공원의 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 등) ① 공원의 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점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공단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문화, 체육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

다. 사적을 보존하거나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단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그 밖에 공단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객 안내

제11조(안내방송) 공단은 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미아 보호에 관한 사항
3. 분실물을 습득했거나 분실물이 발생한 사항
4.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사항

5. 불법주정차 등이 발생한 사항
6. 공단이 특별히 안내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공익성이 있는 사항

제12조(출입제한) 공원 내 수목, 잔디 및 시설물 보호, 노숙자 등에 의한 질서문란 행위 단속, 심야시간대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원의 개방시간 이외의 시간은 이용객의 출입을 제한한다.

부 칙 <2024. 9. 11.>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벌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제2항 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벌금 300만원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과태료 5만원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과태료 5만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과태료 7만원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과태료 5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과태료 3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과태료 5만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과태료 5만원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제외)	과태료 5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과태료 5만원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별표 2]

공원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제9조제1항 관련)

대 상	기 준	요율 및 금액
1. 사용료		
가. 운동시설	연 액 당	해당 재산가액의 25/1,000
나. 유희시설	연 액 당	해당 재산가액의 50/1,000
다. 기타시설	연 액 당	해당 재산가액의 50/1,000
라. 사 진 사	연 1 인	130,000원
마. 녹 화	1시간당	12,000원
	초과시간당	6,000원
바. 일시사용	1일 330㎡당	12,000원
사. 공원 안 수원지에 저수된 물 사용	기본급 톤당	80원
	초과급 톤당	100원
2. 점용료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4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연 액 당	해당 재산가액의 25/1,000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그 밖의 점용	연 액 당	해당 재산가액의 50/1,000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6호에 따른 행위	연 액 당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70/1,000

[별표 3]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금액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 전액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